|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2014년 개정)**(2006년 3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82차 회의에서 통과;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이 관련 민사분쟁 안건 심리 시의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 회사법이 시행된 이후 인민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과 인민법원이 새로 수리한 민사안건의 해당 민사행위 또는 사건이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민사행위 또는 민사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제2조**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민사행위 또는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민사행위 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적용할 수 있다.**제3조** 원고가 회사법 제22조 제2항, 제74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시 회사법에 규정한 기한이 이미 경과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한다.**제4조** 회사법 제151조에 규정한 연속 180일 이상의 지분보유기간이라 함은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할 때까지 이미 채워진 지분보유기간을 지칭하며; 공동으로 보유한 1%이상의 지분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합계를 지칭한다. **제5조**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을 마친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 이 규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一）(2014修正)**（2006年3月2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82次会议通过；根据2014年2月1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7次会议《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修正） 为正确适用2005年10月27日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八次会议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对人民法院在审理相关的民事纠纷案件中，具体适用公司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第一条** 公司法实施后，人民法院尚未审结的和新受理的民事案件，其民事行为或事件发生在公司法实施以前的，适用当时的法律法规和司法解释。**第二条** 因公司法实施前有关民事行为或者事件发生纠纷起诉到人民法院的，如当时的法律法规和司法解释没有明确规定时，可参照适用公司法的有关规定。**第三条** 原告以公司法第二十二条第二款、第七十四条第二款规定事由，向人民法院提起诉讼时，超过公司法规定期限的，人民法院不予受理。**第四条** 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规定的180日以上连续持股期间，应为股东向人民法院提起诉讼时，已期满的持股时间；规定的合计持有公司百分之一以上股份，是指两个以上股东持股份额的合计。**第五条** 人民法院对公司法实施前已经终审的案件依法进行再审时，不适用公司法的规定。**第六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实施。 |